

한국지방재정공제회 정관

1964.	9.	3	제정	1969.	1.	1	개정
1971.	12.	13	개정	1977.	10.	29	개정
1979.	7.	19	개정	1979.	12.	1	개정
1981.	9.	22	개정	1983.	1.	25	개정
1986.	1.	28	개정	1988.	6.	1	전문개정
1989.	7.	29	개정	1991.	12.	30	개정
1993.	5.	18	개정	1994.	1.	1	개정
1994.	6.	10	개정	1996.	1.	1	개정
1998.	2.	23	개정	1998.	11.	11	개정
2000.	2.	19	개정	2002.	10.	31	전문개정
2003.	8.	8	전문개정	2007.	4.	5	개정
2008.	2.	27	개정	2008.	4.	1	개정
2009.	12.	31	개정	2011.	4.	26	개정
2012.	2.	10	개정	2012.	12.	26	개정
2013.	10.	22	개정	2013.	12.	31	개정
2014.	8.	14	개정	2015.	2.	13	개정
2015.	9.	22	개정	2016.	12.	22	개정
2017.	8.	1.	개정	2017.	12.	28	개정
2018.	12.	27	개정				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명칭) 이 법인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지방재정공제회(이하 “공제회”라 한다)라 한다.

제2조(목적) 공제회는 회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·운영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운영과 지방재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사무소) ①공제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253-42번지에 둔다. <개정 2008.2.27.>

②특별시, 광역시·도·특별자치도와 특별자치시에 지부를 둔다. <개정 2008.2.27., 2012.12.26.>

제 2 장 회 원

제4조(회원의 자격) 공제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

<개정 2012.2.10.>

1. 행정안전부 <개정 2013.10.22., 2015.2.1., 2017.12.28.>
2. 특별시·광역시·도·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와 시·군·자치구 <개정 2008.2.27, 2012.2.10>
3.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조합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거나 출자한 법인

제5조(회원의 가입 및 탈퇴) ①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가입신청에 의하여 그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.

②회원은 원에 의하여 공제회를 탈퇴할 수 있다.

제6조(회원의 권리의무) ①회원은 공제회의 사업수행에 참가하고, 이에 따른 모든 권익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.

②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.

1. 법·정관 및 규정을 준수할 의무
2.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
3. 회비납부의무

제7조(회원의 자격상실) 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.

1. 회원이 통·폐합 되었을 경우
2. 제4조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조합 또는 법인이 해산되었을 경우 <개정 2017.8.1.>
3. 회원이 탈퇴하는 경우

제 3 장 회 의

제 1 절 총 회

제8조(구성) ①총회는 회원 전원으로 구성한다.

②총회의 의장은 공제회의 이사장이 된다.

제9조(소집과 의사)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.

②정기총회는 이사장이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에 소집한다.

③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1에

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이 14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
1.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임시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
 2. 운영위원회가 그 의결을 거쳐 임시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
 3. 감사가 공제회의 회계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불비한 사항이 있음을 발견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<신설 2012.2.10.>
- ④이사장이 정기총회 또는 임시총회를 소집하고자할 때에는 회의개시일 5일전까지 각 회원에게 회의개회 일시 및 장소와 회의안건을 서면 또는 전신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- ⑤총회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.
- ⑥회원은 서면으로 표결하거나 또는 대리인을 출석시켜 표결하게 할 수 있다. 다만, 대리인은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.
- ⑦이사장은 총회를 소집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을 구할 수 있다.

제10조(의결사항) 총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.

1. 정관의 변경
2. 이사장 및 감사의 선출과 임원해임에 관한 사항 <개정 2016.12.22.>
3. 사업의 기본계획
4. 예산의 심의
5. 결산의 승인
6. 공제회의 해산
7.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운영위원회가 부의하는 사항

제11조(회의록) 총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그 회의의 전말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
제 2 절 운영위원회

제12조(구성) ①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1. 이사장, 이사
2. 행정안전부 공제회업무 담당과장 및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. 다만,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은 옥외광고업무 관련 안건에 한하여 참석한다. <개정 2007.4.5., 2008.2.27., 2008.4.1., 2013.10.22., 2014.2.13., 2017.8.1., 2017.12.28.>

3. 특별시·광역시·도·특별자치도·특별자치시의 공유재산 담당국장 <개정 2008.2.27., 2012.12.26.>

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공제회의 이사장이 된다.

제13조(소집과 의사) ① 운영위원회는 이사장이 소집하되 회의개회일 5일전까지 각 운영위원에게 개회일시 및 장소와 회의안건을 서면 또는 전신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
② 감사가 공제회의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사항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고 운영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 이사장은 14일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
③ 운영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.

④ 운영위원은 서면으로 표결하거나 또는 대리인을 출석시켜 표결하게 할 수 있다. 다만, 대리인은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.

⑤ 이사장은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의 결을 구할 수 있다.

⑥ 임원해임 등에 관한 안건 등 운영위원 1/3이상이 서면으로 운영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 14일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 <신설 2016.12.22.>

제14조(의결사항)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.

1. 규정의 제정·개정 또는 폐지
2. 사업의 기본계획안
3. 이사장 및 감사 후보자의 추천과 임원해임에 관한 사항 <개정 2016.12.22.>
4. 총회에 부의할 사항
5.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
6. 사업집행에 관련되는 중요사항
7. 그 밖에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

제15조(회의록)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그 회의의 전말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
제 3 절 자문위원회

제16조(경영자문위원회) ① 공제회의 운영에 관한 자문을 받기 위하여 경영자문위원회(이하 “자문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 <개정 2016.12.22.>

②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16조의2(자산운용 관련 위원회) ① 공제회는 자산의 효율적·안정적 관리를 위하여

위원회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
② 위원회에는 외부전문가가 포함되어야 하며, 관련 사항은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.

<신설2018.12.28.>

제17조(구성 등) 삭제 <2016.12.22.>

제 4 장 임 원

제18조(임원) ①공제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.

1. 이사장 1인
2. 이사 4인 <개정 2008.2.27., 2017.8.1.>
3. 감사 2인 이내 <개정 2017.8.1.>

②이사장 및 이사는 상임으로 한다. <개정 2017.8.1.>

③감사 중 1인은 상임으로 한다. <신설 2017.8.1.>

④이사장 및 이사와 상임감사는 공제회 이외의 다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. <신설 2017.8.1.>

제19조(임원의 자격) 공제회의 임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

1. 지방행정·재정에 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있는 자
2. 지방행정·재정발전에 공헌한 실적이 있는 자
3. 공제회에서 다년간 근무한 실적이 있는 자
4. 옥외광고에 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있는 자 <신설 2008.2.27.>

제20조(임원의 선임) ①이사장과 감사는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출하되,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<개정 2008.4.1., 2013.10.22., 2015.2.13., 2017.12.28.>

②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되,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<개정 2008.4.1., 2013.10.22., 2015.2.13., 2017.12.28.>

제21조(임원의 임기) ①이사장·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,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
②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새로이 후임자가 선임 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. <신설 2014.8.14.>

제22조(임원의 직무) ①이사장은 공제회를 대표하고 총회의 의장과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, 공제회의 운영과 사무를 통할한다.

②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여 공제회의 운영과 사무를 처리하며,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순서는 직제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<개정 2008.2.27., 2017.8.1.>

③감사는 매년 1회 이상 공제회의 회계와 업무집행 사항을 감사하고, 그 결과를 총회 및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④감사는 총회 및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

제23조(임원의 결격사유)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공무원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는 공제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.

제23조의2(신분보장 등) ①임원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그 임기 중 해임되지 아니한다.

1. 법 또는 정관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

2.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제회 재산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 때

3.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태만히 한 때

②임원이 제1항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의결 및 총회의 의결로 해임하되,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<개정 2017.12.28.>

③제2항에 의한 해당 임원에 대해 운영위원회 의결일로부터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시까지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한다. <개정 2017.12.28.>

[본조신설 2016.12.22.]

제 5 장 조 직

제24조(사무기구) ①공제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기구와 직원을 두며, 직원은 이사장이 임명한다. 다만, 부설기관 직원에 대해서는 부설기관 운영 규정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. <개정 2017.8.1.>

②사무기구의 분장사무와 직원의 정원·임면·보수·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.

③공제회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설기관을 둘 수 있으며 부설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 <신설 2015.9.22.>

제24조의2(공무원등의 파견) 공제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관계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, 옥외광고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공무원, 법인 또는 단체의 임·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. <개정 2008.2.27., 2008.4.1., 2013.10.22., 2015.2. 13., 2016.12.22., 2017.12.28.>

제25조(지부) ①지부에는 지부장을 두며 지부장은 특별시의 행정제1부시장·광역시·

특별자치시의 행정부시장 및 도·특별자치도의 행정부지사로 한다. <개정 2008.2.27., 2012.12.26.>

②지부장은 당해 지부의 공제사무를 관장하여 성실히 처리하여야 하며, 이사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③지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.

제26조(자문위원 위촉) 공제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률·회계·사무·사업개발·기금운용 등 해당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.

제 6 장 사 업

제27조(사업)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

1. 공유재산의 재해복구를 위한 공제사업
- 1의2. 공유재산의 관리, 운영, 제도연구 및 개발사업 <신설 2017.12.28>
2. 영조물 또는 업무수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공제사업
3. 지방재정지원 공제사업 <개정 2012.12.26.>
- 3의2. 상해공제사업 <신설 2017.8.1.>
4. 삭제 <2012.12.26.>
5. 회원의 기금 위탁관리사업
6. 삭제 <2011.4.26.>
7. 회원의 지방재정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
8. 부동산 개발 및 임대사업
9.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옥외 광고사업 및 부대사업 등 관련사업 <개정 2008.2.27., 2016.12.22.>
10. 지방재정 관련 통계분석 검증·회계제도 연구지원사업 및 지방계약지원 사업 <신설 2015.9.22., 개정 2017.8.1.>
- 10의2. 원가계산 및 원가검토 사업 <신설 2017.12.28.>
11. 주무관청 또는 회원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<개정 2008.2.27.>
12. 그 밖에 공제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수익사업 <개정 2008.2.27.>

제28조(재해복구공제사업) ①공제회는 회원이 소유·사용·관리하는 건물, 시설물 및 관공선 등(이하 “공제등록물건”이라 한다)에 재해가 발생한 경우 재해복구비를 지급한다.

②공제회는 공제등록물건의 사고예방과 구조개선 등을 위하여 재원을 대여할 수

있다.

③공제등록물건에 대한 등록·회비납부·재해복구비 지급 및 대여 등 사업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.

제29조(배상공제사업) ①공제회는 회원이 소유, 사용, 관리하는 영조물의 관리하자 또는 업무상 과실 등으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혀 발생한 법률상 손해배상과 관련한 업무를 지원한다.

②공제회는 손해배상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손해보험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관련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.

③배상공제사업의 대상이 되는 영조물 또는 민원업무의 등록·회비납부 및 손해배상금의 지급 등 사업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.

제30조(지방재정지원공제사업) ①공제회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청사(서울특별시와 그 관할 자치구는 제외한다)를 계획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공공청사의 신·증축 매입 또는 에너지절약을 위한 개보수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와 지역개발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령상의 지방채 발행대상사업과 지방관공선 신규 건조비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지원한다. <개정 2009.12.31., 2012.12.26., 2013.12.31.>

②지원대상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지원 공제적립금 운용계획과 지방채 발행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정한다. <개정 2008.4.1., 2012.12.26., 2013.10.22., 2015.2.13., 2017.12.28>

③재원조성, 회비납부·지원금 지원 및 환수 등 사업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. <개정 2012.12.26.>

제31조 삭제 <2011.4.26.>

제32조(회원지원사업) ①공제회는 회원지원사업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.

1. 지방재정관련 도서발간사업
2. 지방재정관련 학술행사 등 지방재정제도발전연구사업
3. 지방재정관련 자료의 수집 및 관리
4. 공제사업을 위한 업무연찬사업
5. 그 밖에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업

②회원지원사업비는 공제회계 재원으로 한다.

③사업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.

제32조2(옥외광고사업 등) ①공제회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

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옥외광고사업 및 부대사업 등 관련 사업을 수행한다. <개정 2016.12.22.>

②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의 배분대상, 배분비율, 기타 수익금 배분 등 운용 및 관리에 대하여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며, 그 밖의 사업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. <개정 2016.12.22.>

[본조신설 2008.2.27.]

제32조의3(지방회계통계사업 등) ①공제회는 지방회계통계사업으로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. <개정 2017.8.1.>

1. 지방회계 및 지방재정통계 개선방안 연구사업 <개정 2017.8.1.>
2.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재무회계결산 지원사업
3. 국가/국제기준에 의한 재정통계 분석 사업
4. 맞춤형 회계 전문교육 및 홍보사업
5. 지방계약 상담·교육, 계약분쟁 사건 검토 및 조사사업

②사업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15.9.22.]

제 7 장 재정 및 회계

제33조(재정) ①공제회의 재정은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 및 출연금,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. <개정 2008.2.27.>

②공제회는 공제회의 보호·육성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 및 필요경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. <개정 2008.2.27.>

제34조(경비) 공제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사업수입금과 적립금의 증식이자,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 <개정 2008.2.27.>

제35조(특별회계) 공제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.

제36조(예산의 편성과 승인) ①공제회의 회계연도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.

②공제회는 다음 회계연도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개시 1월전에 총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<개정 2008.4.1., 2013.10.22., 2015.2.13., 2017.12.28>

제37조(결산보고) 공제회는 회계연도 경과 후 3월 이내에 대차대조표·손익계산서·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및 재산목록이 첨부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총회의 승인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<개정 2008.4.1., 2013.10.22., 2015.2.13., 2017.12.28>

제38조(적립금구성) 공제회는 매 결산기마다 사업의 종류별로 사업에 총당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준비금과 이익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. <개정 2008.2.27.>

1. 회 비
2. 이자수입
3. 수익사업의 이익금
4.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<신설 2008.2.27.>
5. 그 밖의 수입 <개정 2008.2.27.>

제39조(현금자산의 관리) 공제회의 자산 중 현금은 다음 방법에 의하여 이사장이 관리한다.

1. 은행예금 또는 신탁
2. 국공채·주식 또는 증권투자
3.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방법

제40조(회계처리) 공제회의 예산 및 회계에 관하여는 정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제회의 재무회계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.

제 8 장 해 산

제41조(해산) 공제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 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 <개정 2008.4.1., 2013.10.22., 2015.2.13., 2017.12.28>

제42조(잔여재산의 처리) 공제회를 해산한 때에 그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처리한다. <개정 2008.4.1., 2013.10.22., 2015.2.13., 2017.12.28>

제 9 장 보 칙

제43조(위임규정)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하되 사업·조직·인사 및 임직원의 보수에 관한 규정을 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. 단, 부설기관에 대한 사업·조직·인사에 관한 사항은 부설기관 운영규정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. <개정 2008.4.1.,

2013.10.22., 2015.2.13., 2017.8.1., 2017.12.28>

제44조(경영공시) ①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.<개정 2018.12.27.>

1. 자산운용 계획 및 현황, 손익현황, 예산·결산서, 재무상태표 등 주요 경영정보
2. 감사원·행정안전부의 감사 결과 및 외부전문가에 의한 회계 감사 결과
3. 자산운용에 관한 주요 규정

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여야 하고, 주된 사무소에 필요한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. <신설 2018.12.27.>

부 칙 <전문개정 1988.6.1.>

제1조(시행일) 본 정관은 198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.

부 칙 <정관 제12호, 1989.7.29.>

본 정관은 1989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정관 제13호, 1991.12.30.>

제1조(시행일) 이 정관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정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상임이사가 임명될 때까지 기획이사 및 업무이사의 분장업무는 종전의 기획관리실장과 사무국장이 각각 그 업무를 수행한다.

부 칙 <정관 제14호, 1993.5.18.>

이 정관은 내무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정관 제15호, 1993.11.18.>

이 정관은 내무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정관 제16호, 1994.1.1.>

이 정관은 내무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정관 제17호, 1994.6.10.>

제1조(시행일) 이 정관은 내무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이 정관 시행 당시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대여되었거나 대여키로 결정된

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.

제3조 이 정관 시행 당시의 회장 및 상임이사의 임기는 이 정관에 의해 임명된 것으로 본다. 다만, 최초 임명일은 종전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날로 한다.

부 칙 <정관 제18호, 1996.1.1.>

제1조(시행일) 이 정관은 내무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정관 시행 당시 제12조의 사계전문가 비상임이사 2인의 최초임명일은 이 정관 시행일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.

제3조(폐지규정) 이 정관 시행일로부터 공공시설정비기금특별회계규정을 폐지한다.

부 칙 <정관 제19호, 1998.2.23.>

이 정관은 내무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정관 제20호, 1998.11.11.>

제1조(시행일) 본 정관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정의 개정) ①재해복구공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중 “정관 제26조”를 “정관 제27조”로 한다.

제10조제3항중 “정관 제25조제2항”을 “정관 제27조제2항”으로 한다.

제15조제1항중 “정관 제25조와 제26조”를 “정관 제27조와 제28조”로 한다.

②재해복구심의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중 “정관 제26조”를 “정관 제28조”로 한다.

③재해복구비대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중 “정관 제4조 5호 및 제27조2”를 “정관 제4조 5호 및 제29조”로 한다.

④지방관공선공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중 “정관 제4조 및 제28조의 2”를 “정관 제4조 및 제30조”로 한다.

⑤공공시설정비지원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“공공시설정비지원규정”을 “공공청사정비지원규정”으로 한다.

제1조중 “정관 제4조, 제29조, 제30조 및 제33조”를 “정관 제4조, 제32조, 제33조, 제35조”로 한다.

제6조제1항중 “정관 제33조”를 “정관 제35조”로 한다.

⑥인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중 “기획이사, 업무이사”를 “상임이사”로 한다.

⑦회원공동및지원사업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중 “정관 제4조제6호 및 제7호와 제34조의 2”를 “정관 제8호 및 제39조”로 한다.

⑧지부조직및운영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중 “정관 제22조”를 “정관 제23조”로 한다.

⑨재무회계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8조중 “소관담당이사”를 “상임이사”로 한다.

⑩다른 규정 및 규칙의 “내무부”를 “행정자치부”로 “내무부장관”을 “행정자치부장관”으로 한다.

부 칙 <정관 제21호, 2000.2.19.>

이 정관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정관 제22호, 2002.10.31.>

제1조(시행일) 이 정관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정의 개정) ①지부조직및운영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중 “정관 제23조”를 “정관 제22조”로 한다.

②재해복구공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중 “정관 제27조”를 “정관 제26조”로 한다.

제10조제3항중 “정관 제27조”를 “정관 제26조”로 한다.

제15조중 “정관 제26조와 제28조”를 “정관 제25조와 제26조”로 한다.

③재해복구비대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중 “정관 제4조5호 및 제29조”를 “정관 제4조 및 제27조”로 한다.

④지방관공선공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중 “정관 제4조 및 제30조”를 “정관 제4조 및 제26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로 한다.

⑤지방자치단체배상공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중 “정관 제4조, 제36조, 제37조 및 제38조”를 “정관 제4조, 제31조, 제32조”로 한다.

제3조중 “정관 제37조”를 “정관 제32조”로 한다.

제6조중 “정관 제37조”를 “정관 제32조”로 한다.

제8조중 “정관 제38조”를 “정관 제32조”로 한다.

⑥공공시설정비지원규정의 제목을 공공청사정비공제규정으로 하고,

제1조중 “정관 제4조, 제32조, 제33조 및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”를 “정관 제4조, 제28조, 제29조,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청사정비공제 기금의”로 한다.

제6조중 “정관 제35조”를 “정관 제30조”로 한다.

⑦회원지원사업운영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중 “정관 제4조 및 제39조”를 “정관 제4조 및 제35조”로 한다.

⑧지방공기업발전지원사업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중 “정관 제4조, 제36조의2 내지 제38조의4”를 “정관 제4조, 제32조 및 제34조”로 한다.

⑨다른 규정 및 규칙의 “지방재정세제국장” 을 “지방재정경제국장” 으로 “재정경제과장” 을 “재정과장” 으로 한다.

부 칙 <정관 제23호, 2003.8.8.>

이 정관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정관 제24호, 2007.4.5.>

이 정관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정관 제25호, 2008.2.27.>

이 정관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정관 제26호, 2008.4.1.>

이 정관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정관 제27호, 2009.12.31.>

이 정관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정관 제28호, 2011.4.26.>

이 정관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정관 제29호, 2012.2.10.>

이 정관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정관 제30호, 2012.12.26.>

이 정관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정관 제31호, 2013.10.22.>

1. (시행일) 이 정관은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2. (다른 규정의 개정) 다른 규정 및 규칙의 “행정안전부”를 “안전행정부”로 “행정안전부장관”을 “안전행정부장관”으로 한다.

부 칙 <정관 제32호, 2013.12.31.>

이 정관은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정관 제33호, 2014.8.14.>

이 정관은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정관 제34호, 2015.2.13.>

제1조(시행일) 이 정관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정의 개정) 다른 규정 및 규칙의 “안전행정부”를 “행정자치부”로 “안전행정부장관”을 “행정자치부장관”으로 한다.

부 칙 <정관 제35호, 2015.9.22.>

이 정관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정관 제36호, 2016.12.22.>

제1조(시행일) 이 정관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정의 개정) 정관, 다른 규정 및 규칙의 “옥외광고물등관리법”을 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”로 “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”을 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”으로 한다.

제3조(다른 규정의 인용) 정관, 다른 규정 및 규칙에서 인용한 정관 “제24조의1”은 “제24조의2”로 “32조의1”은 “제32조의2”로 “제32조의2”는 “제32조의3”으로 한다.

부 칙 <정관 제37호, 2017.8.1.>

이 정관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정관 제38호, 2017.12.28.>

제1조(시행일) 이 정관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정의 개정) 다른 규정 및 규칙의 “행정자치부”를 “행정안전부”로 “행정자치부장관”을 “행정안전부장관”으로 한다.

부 칙 <정관 제410호, 2018.12.27.>

이 정관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